

군포도시공사 제5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」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 사장 원 명 희

2020년 5월 6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47호

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 일부개정 규정

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(특별휴가)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(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)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1.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,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·중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(이하 “어린이집 등”이라 한다)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

2.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(건강검진, 예방접종 포함)에 동행하는 경우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영기획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영기획부장 이 현 동
	담당 성명 (전화번호)	이 태 권 (390-7615)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제 정 (안)
제35조(특별휴가) ①~②<생략> ③<신설>	제35조(특별휴가) ①~②<현행과 같음> ③ <u>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(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)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.</u>
1.<신설>	1. <u>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,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(이하 “어린이집 등”이라 한다)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</u>
2.<신설>	2. <u>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(건강검진, 예방접종 포함)에 동행하는 경우</u>